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94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윤영석 · 박덕흠 · 박성훈
김태호 · 구자근 · 유용원
박성민 · 곽규택 · 조경태
최형두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확대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문 수요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교통·상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인구 감소와 소비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으로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소비 지원 제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이 동일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역 내부의 소비 순환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함. 이에 따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새롭게 유입시키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비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지역 간 불균형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을 넘어, 관광 수요와 외부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별도의 조세 지원 장치가 필요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광 목적의 비수도권 방문 중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를 별도로 장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게 하며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에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에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은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 합산하여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 7. (생략)

③ ~ ⑩ (생략)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에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

1. -----
